

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(제11조의2 관련)

구분		단위	기준
원료 혼합비율		%	가축분뇨 60 이상, 보조원료 40 미만
저위발열량		kcal/kg	3,000 이상
수분		%	20 이하
회분		%	30 이하
황분		%	2 이하
금속 성분	수은(Hg)	mg/kg	1.2 이하
	카드뮴(Cd)		9.0 이하
	납(Pb)		200.0 이하
	크로뮴(Cr)		70.0 이하

※ 비고

- 가축분뇨에 혼합할 수 있는 보조원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에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5호 나목1)에 따른 R-9-1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.
 - 농작물의 부산물(콩대, 옥수수대, 왕겨 등)
 - 커피찌꺼기
 - 초분류
 - 톱밥
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 제2호 51-20-99란에 따른 그 밖의 폐목재류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한 폐기물만 해당한다)
- 위 표 저위발열량(低位發熱量: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)의 기준란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투입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해서는 2,000kcal/kg 이상을 적용한다.
- 회분[灰分: 유기질이 회화(灰化)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], 황분(黃分: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,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),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화력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%를 초과할 수 있다.